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 92

제출연월일 : 2011. 10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, 가족교육·상담, 정보제공,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·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의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나.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. 위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(안 제8~16조)
- 다.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·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7~23조)
- 라.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2011년 예산 기 확보(100,900천원)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6.20~7.11(21일간), 제출된 의견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다 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 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조례의 범위) 이 조례의 범위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다문화가족이 평창군내에서 안 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둔다.
- 제3조(평창군의 책무) 평창군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사업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 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,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
 - 2.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, 사회적응·직업교육 및 훈련
 - 3. 다문화가족의 민주적이고 양성평등을 위한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배우자교 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실시
 - 4.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
 - 5.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·교육 및 산전·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 서 비스 지원
 - 6.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·교육 등 양육지원
 - 7.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 소요경비 지원 사업
 - 8.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공무원 교육

- 9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제5조(예산지원) ① 군수는 제4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나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 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 - ③ 군수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·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업무위탁)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제7조(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) 군수는 군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- 제8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)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직접운영 또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군수는 신청자 중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한다.
 - ③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지원센터의 업무)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
- 2. 한국어교육, 한국문화이해교육, 가족교육, 가족상담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
- 3. 방문교육사업(한글교육지도, 아동양육교육지도) 지원
- 4. 관련단체, 관공서 등과 네트워크 형성 체계 사업 추진
- 5. 다문화가족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
- 제10조(지원센터의 위탁계약)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계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-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후 사업추진 실적, 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시설 관리·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련한 규정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·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③ 수탁자는 제5조의 보조금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 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·전대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건전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- ⑤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관리·운영하면서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
- 제12조(수탁자의 권한) 수탁자는 제14조의 자격기준에 의거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센터장과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.

- 제13조(지원센터의 조직) 지원센터에는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종사자 2명을 두어야 한다.
- 제14조(센터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) ①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관련학과(가정학, 사회복지학, 여성학, 상담학)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
 - 2. 관련학과(가정학, 사회복지학, 여성학, 상담학)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
 - 3. 실무경력(사회복지, 가족지원, 가족상담) 5년 이상인 자
 - 4. 직영에 한하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 - ②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- 1. 건강가정사, 사회복지사, 가족상담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
 - 2. 유사 자격요건(가족상담사를 제외한 상담사, 보육교사, 교원자격, 가정복지사)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
- 제15조(지원센터 위탁의 취소) 군수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창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 - 2. 수탁자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때
 - 3.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원센터 관리·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파단될 때
 - 4. 그 밖에 공익상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- 제16조(지원센터 지도감독)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위탁한 지원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운영사항 전반과 관련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3장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

- 제17조(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 다문화가 족지원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 - 1.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제4조에 관한 사항
 - 3. 지원센터의 지정·심사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8조(구성)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.
 - 1. 당연직위원 : 부군수, 다문화가족담당 실·과장 1명
 - 2. 위촉직위원
 - 가. 군의원 1명
 - 나. 평창군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경찰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
 - 다.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대표, 평창군보육시설연합회 대표
 - 라. 다문화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
 - 마.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
- 제19조(위원의 임기) ① 당연직 위원과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 - ②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③ 위원이 사직을 하거나 사망,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, 군수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제20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1조(회의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(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)
- 제22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 - ②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.
 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위원수당 및 실비변상)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24조(표창)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「평창군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					
신청기관 현황	법인명 (단체명)			대표자	
	소재지				
	설립일자			설립근거	
	전화번호			e-mail	
				팩스번호	
	사업책임자	<직위>	<성명>	<연락처>	
구비서류	1. 사업계획서 2.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
「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 . · · ·					
신청인			(인)		
평창군수 귀하					

관계법령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- 제5조(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, 법률상담 및 행정

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- 제9조(산전·산후 건강관리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·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산전·산후 도우미 파견, 건 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아동 보육·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 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1조(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.18>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 - 2.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
 - 3.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 - 4.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·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-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제 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각각 정한다. <개정 2010.1.18>
- 제14조(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)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하다.
- 제15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수 있다. <개정 2010.1.18>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6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·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재한외국인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- 2. "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"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결혼이민자"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 인을 말한다.

□ 국적법

제2조(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

시에 대한민국 국적(國籍)을 취득한다.

- 1. 출생 당시에 부(父)또는 모(母)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
- 2.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
- 3.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
-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(棄兒)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3.14]
- 제4조(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)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(歸化許可)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.
 -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다.
 -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08.3.14]